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2676(본소), 2023다21268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인도청구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박철환, 오수원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조성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문

판 결 선 고 2023. 6. 1.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65070(본소), 2021나65087 (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및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본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3.경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나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 본소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소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에 관하여도 아울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3.경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임대차계약서는 영농보상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및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